

의회토론에 대한 논평 · 묘사 기사가  
다른 면에 게재된 전체 기사를 인용·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해

Cook v. Alexander and Others  
[1974] 1Q. B.(C.A.)

**사실개요**

불량 미성년자를 수용, 교육하는 내무성 인가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Court Lees 라는 원고는 1967년 5월 2일과 같은 달 7일 「The Guardian」이란 언론기관에게 위 학교의 운영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익명으로 써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학교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내용은 위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되었고, 「The Daily Mail」이란 언론기관에 의하여 다시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내무성이 위 학교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원고와 위 학교 교장 참여하에 조사절차가 진행, 완료된 결과, 원고가 지적한 11개의 비위사실 가운데 4개는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인 것으로 밝혀 졌다. 그러자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 내무상은 위 학교의 폐쇄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어디론가로 보내졌으며, 직원들은 실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위 사태추이를 주시하던 Jellicoe 백작의 동의에 의하여 1967년 10월 25일 위 문제는 귀족원의 의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러, 위 학교를 폐쇄한 내무성 조치에 대한 찬, 반 토론이 11인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그 중 원고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Stockwood 주교의 발언이 특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Longford 의원은 위 주교의 발언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다음날인 1967년 10월 26일 「The Daily Telegraph」지는 위 귀족원의 토론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 27면에서는 토론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정확하게 사실대로 게재하고, 맨 뒷면인 32면에서 「Parliamentary Sketch」라는 단편적인 묘사기사란에서 위 토론의 방청기자가 가장 인상깊게 느낀 부분만을 다시 중점적으로 논평, 묘사하였다. 그 묘사기사에서 위 신문은, 『주교가 학교의 개혁 운동가를 공격하다』라는 제목아래, 「위 주교는, 위 학교의 운영을 비판하여 문을 닫게 한 원고야말로, 교육 도중 육체적인 징계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을 교장실에 보낸 사람이라고 폭로하면서, 그의 여러가지 비위사실을 열거하여 원고를 통렬하게 공격하였고, 이에 의원들은 흥미를 느끼고 위 주교의 발언을 경청하였고, 위 주교가 다시 본격적인 공개청문회를 열어 위 학교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였을 때에는 상당수가 공감을 표시하였다. 사회자인 Longford 의원은 위 주교의 발언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내용의 것이라면서 반박하였으나, 그 어조는 다소 더듬거리는 투였다」는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1971년 10월 28일 위 논평, 묘사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집필기자인 Andrew Alexander, 편집자인 Maurice Green 그리고 위 기사를 보도한 The Daily Telegraph 신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1 심 판사 및 배심원들은, 피고들에게 악의는 없었다는 전제 하에, 위 논평, 묘사기사가 과연 공정하고 진실한 것이냐를 중심으로 심리한 결과, 두 번에 거친 평결 끝에 11 대 1 의 다수결로 원고에게 금 1,000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 설사 위 논평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귀족원의 토론에 대한 공정 하고 진실한 보도이거나 공공의 이해사상에 관한 공정한 논평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둘째, 이 사건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평결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데닝(DENNING)재판장: 이 사건은 Wason v. Walter(1868) L. R. 4 Q. B. 73 사건 이래 100 여년 이상 논의된 바 없는, 의회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보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위 Wason v. Walter 사건에서 다른, 의회 내의 토론 진행상황 전체를 개괄하여 게재하는 일반보도와는 달리, 그 중 일부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 논평만을 게재, 보도한 것이어서 이 법원이 한번도 취급한 적이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일반보도 사건에 대하여 위 Wason v. Walter 사건의 법원은, 만약 그 보도가 공정하고 바른 것이라면 그 보도자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시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위 법원은, 공공의 복리가 걸린 사항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무엇이 말하여지고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그대로 일반 공중에게 보도한다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회의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 사회 일반의 이익은 그 보도로 말미암아 명예가 침해되는 개개인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토론자가 말한 내용이 전혀 그릇 된 것이라던가, 뚜렷한 악의에 기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보도자나 언론기관은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일반보도뿐만 아니라 그 보도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회내의 진행과정은 전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은 일반보도의 경우이고, 소위 「parliamentary Sketch」 라는 논평, 묘사기사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보도자는 모든 발언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토론내용 중 자기에게 특별히 공공의 이익 및 관심사항으로 비친 사항만을 골라 서술하고, 그것이 의회 내에서 불러일으킨 반향 등을 묘사해 낸다. 나는 이와 같은 의회토론의 묘사, 논평기사도 그것이 방청자들에게 준 영향, 인상을 그대로 전하여 줄 의도로 공정하고 바르게 씌여진 이상,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의회 내의 토론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신문일지라도 그 내용의 전부는 물론, 모든 발언자들의 이름이나 심지어는 주된 연설의 대강도 요약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토론이 특별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거기에는 다른 사항보다 일반의 관심이 더 크게 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도자가 의회의 진행절차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도

전하여 주고자 하려면, 그는 특별히 일반의 관심이 크다고 보여지는 사항만을 골라서 취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는 그 부분을 모두 게재할 필요는 없다. 그 토론 자체가 방청자들에게 심어 준 인상을 충실하게 독자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의 공정한 소개만을 하면 족하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보도자가 위 기사에서, 위 주교는 원고에게 「통렬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위 주교의 위 발언이 위 보도자에게 준 충격적인 인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보도자가, 「의원들이 재미있어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때, 그는 그가 본 의원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Longford 의원이 「다소 더듬거리는 어조로 원고에게 답변하였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위 의원의 태도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방청인의 인상을 전하여주는 묘사기사는, 그것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보도자의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주교의 발언에 큰 비중을 주고 Longford 의원의 답변에는 아주 적은 비중을 준 것은 불공정하고, 그 답변을 더듬거리면서 했다고 묘사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성이 라는 것은 그 발언이 방청인들에게 준 인상을 공정하게 소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적으로 원고와 그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묘사보도는 방청인들이 받은 인상을 공정하게 소개, 표현하고 있다. 위 주교의 발언은 가장 큰 충격을 주었고, 따라서 보도내용 중 특별한 비중을 차지해야만 했다. 만약 그 발언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거나, 위 Longford 의원의 반박이 생략되었다면, 그 소개, 표현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공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신문 뒷면에 게재된 위 논평, 묘사기사는 신문 안쪽에 게재된 위 의회토론의 전체내용 기사를 인용, 참조하고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위 안쪽 기사를 읽어 볼 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위 뒷면 기사와 안쪽면 기사는 합쳐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배심원들의 평결을 번복하기로 한다.

버클리(BUCKLEY) 판사: 이 사건과 같은 의회내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보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하여는 위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하기 위하여는, 토론자들 쌍방으로부터 제출된 쟁점과 주장들을 독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여 줄 있도록 토론 또는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의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의 기자나 편집자는, 쓸데없이 남을 헐뜯는 것과 같은 무가치한 경우가 아니고, 진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던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의사진행 또는 토론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만약 독자들이 직접 위 토론을 방청하였더라면 절실히 느끼고, 깊은 인상을 받았으리라는 부분만을 골라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보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논평, 묘사기사는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관련된 부분의 의사진행 상황을 공정하게 독자에게 전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의회토론 내용 중 특별히 한 부분만을 골라 보도한 위 기사는 관련된 위 토론진행상황을 왜곡하여 그 내용을 표현했다고 할 만큼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Denning 재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논평, 묘사기사는 그 내용 중 두 군데서나 위신문의 다른 면에 게재되어 있는 전체 기사를 인용,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근거 및 Denning 재판장이 보다 상세히 실시한 이유로 제 1 심 배심원들이 도달한 결론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튼(LAWTON) 판사: 2 세기 이상 이 나라 국민들은 의회 내의 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고, 언론은 국민들에게 위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 하여왔다. 그런데 그 보도방법은 인간생활의 다른 활동부분과 마찬가지로 유행 따라 때때로 변하여 왔다. 대략 1939 년경까지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의회 내의 진행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용지가 부족하였던 전쟁기간을 겪은 후, 국민들도 위와 같은 상세한 보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자, 근래에 이르러서는 「The Times」 지, 「The Daily Telegraph」 지, 「The Guardian」 지 등의 3 개 신문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보도방법을 쓰는 언론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신문들은 소위 「parliamentary Sketch」 라는 단편적인 보도를 하게 되었고, 위에서 든 3 개 신문은 종래의 전체적인 요약보도의 방법과 단편적인 묘사보도의 방법을 병행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묘사보도의 경우에도 보도자는 전통적인 요약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위 묘사보도는 그 성질상 전체적인 위 요약보도와 같이 세부사항까지 들어가 보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묘사보도도 위 요약보도와 마찬가지로의 상세한 내용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로지 문제는 위 보도가 공정하냐의 점에 있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은 형평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평의 유지는 정부나 야당 또는 다른 의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원고의 명예에 대한 관계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일선기자는 일반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청한다. 그런데 그는 위 진행상황을 모두 보도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그는 보도할 만한 것을 취사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그는 자신이 공정한 마음과 분별있는 생각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위 토론내용 중 그의 기억속에 남게 될 것은 무엇일가를 유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것을 그는 보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 남는 문제는, 과연 원고에 대한 위 의회토론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상황은 무엇이이었을까의 점이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위 주교의 발언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위 주교가 약 2 개월간 끌어오던 위 토론과정에서 새롭고

놀라운 사실 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의심스러운 점 도 있어서 , 이를 둘러싸고 Longford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과 위 주교 사이에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위 단편보도에서 나타내져 야 한다. 그리고, 위 주교의 발언내용에 대한 위 논평과 비판은 모두 적절하게 이 사건 단편보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인 배심원들이라면 제 1 심 배심원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